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1. 7. 2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6. 16.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 6. 16.
- 다. 상정일자 : 제81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위원회(2001. 7. 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종선 청소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일부 규제사항을 폐지 및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생활폐기물중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효과적인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를 확립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하는 한편,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①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 당일까지 구청장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제1항)

-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제2항)
-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영업대상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제4항)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마포구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 특수규격봉투를 사용하고, 배출 후에는 지체없이 배출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 행정규제 정비개혁과 관련하여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봉투판매소를 지정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제2항)
- 규격봉투 판매업자가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고자 하면 구청장은 규격봉투 판매업자에게 표지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제4항)

3. 근거 법령

- (1) 폐기물관리법(1999.12.31 법률 제6096호) 제2조, 제4조, 제7조, 제12조 내지 제15조 등
- (2) 폐기물관리법시행령(2000.7.22 대통령령 제16909호) 제2조, 제6조 및 제7조 등
- (3)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2000.12.30 환경부령 제104호) 제6조 등

4. 전문위원 겸토 보고

-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2000.12.30 환경부령 제104호) 공포되어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일부 규제사항을 폐지 및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9조의2제2항에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및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내용과 같은 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한하여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도록 하였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신고 및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도록 하였음.

동조제4항에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구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의 대행계약을 체결 하도록 하였음.

- 일반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건설폐기물은 그 동안 처리비용의 과다와 수거업체의 수거기피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기도 하였으나, 법령개정에 따른 동조례 개정시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서 소량의 건설폐기물 수거체계의 개선은 물론 주민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당을 특수규격봉투의 가격은 50ℓ 당 1,800원으로, 95

년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일반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담아 배출
하도록 제작된 P·P포대(50ℓ)를 활용할 예정으로 있으나,
2000년 2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 종합적
인 검토를 거쳐 산정한 50ℓ 당 적정 규격봉투의 가격이 3,221원
으로 산정된 바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봉투 당 1,421원을 보전
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조영천 위원) : 특수규격봉투의 재질은 ?
- 답변요지(김종선 청소행정과장) : 마대로 되어있음.
- 질의요지(조영천 위원) : 건설폐기물이 5t 이상일 경우의 처리는 ?
- 답변요지(김종선 청소행정과장) :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수거함.
- 질의요지(이매숙 위원) : 각동의 특수규격봉투 배분내역은 ?
- 답변요지(김종선 청소행정과장) : 현재 파악된 것이 없으므로
별도 보고하겠음.
-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인건비와 차량유지
비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산정한 50ℓ 당 적정 규격봉투의 가
격이 3,221원인데 1,800원으로 판매할 시 폐기물업체에 1,421원
을 보존하여 주는지 ?
- 답변요지(김종선 청소행정과장) : 물가상승을 감안 현재는 보존
을 못 하여주고 있음.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95년도에 제작된 특수규격포대(P·P)
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가 ?
- 답변요지(김종선 청소행정과장) : 현재 사용할 수 있음.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현재 추가로 제작되었나 ?
- 답변요지(김종선 청소행정과장) : 추가 제작된 일은 없음.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2001. 6.

의안번호	
------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일부 규제사항을 폐지 및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생활폐기물중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효과적인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를 학립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하는 한편,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개정골자

- 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 당일까지 구청장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제1항)
- 나.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제2항)
- 다.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영업대상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제4항)
-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마포구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 특수규격봉투를 사용하고, 배출 후에는 지체없이 배출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 마.** 행정규제 정비개혁과 관련하여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봉투판매소를 지정토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제2항)
- 바.** 규격봉투 판매업자가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고자 하면 구청장은 규격봉투 판매업자에게 표지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제4항)

3. 개정근거

- (1) 폐기물관리법(1999.12.31 법률 제6096호) 제2조, 제4조, 제7조, 제12조 내지 제15조 등
- (2) 폐기물관리법시행령(2000.7.22 대통령령 제16909호) 제2조, 제6조 및 제7조 등
- (3)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2000.12.30 환경부령 제104호) 제6조 등

4. 예산조치 : 표지판 제작을 위하여 2001년도 예산에 300,000원이 반영되어 있고, 표지판 잔량은 10개임.

5. 규제여부 : 제3회 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2000.7.12)에서 일부 사무가 규제정비대상 사무로 심의되어 정비하는 것임.

6.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01.3.31~4.2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9조제1항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당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필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②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내용과 같은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신고 및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구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제4항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중 “배출 3일전”을 “배출 전일”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특수규격봉투인 피피(P·P)포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가. 배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배출장소
- 다. 폐기물 종류
- 라. 배출량(포대수)

제19조제3항중 “폐기물을 담는다”를 “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는다”로 한다.

제24조중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규격봉투 판매업자는 지역주민이 봉투판매소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3”과 같은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규격봉투 판매업자가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해당 규격봉투 판매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의2 관련 별지 제12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되, 감량화의무사업장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①상 호(명 청)					
	③성 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⑥ 배출장소			⑦운반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톤)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⑩ 운 반 차 량		⑪ 운 반 장 소		
		차량번호	운 반 량	업소명	처리방법	처 리 량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마포구청장 귀하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성 명(상호)		주 소				
배출장소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운반차량		운반장소		
		차량번호	운반량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인)

(별지 제13호 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 및 접수대장

연번	신고날자	성 명	배출자주소	배출장소	폐기물종류	배출량 (개수)	전화번호	처리일자	비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2.(생략) (신설)	1. ~ 2.(현행과 같음) 2의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 8.(생략)	3. ~ 8.(현행과 같음)
제9조(생활폐기물 등의 처리대행) ①구 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u>법 제26조제1항</u> 의 규정에 의 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 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 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등의 처리대행) ①----- ----- <u>법 제26조제3항</u> ----- ----- ----- ----- -----
②~④(생략) (신설)	②~④(현행과 같음)
	제9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그 폐기물의

현 행	개 정 안
	<p>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당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필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p> <p>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내용과 같은 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한하여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신고 및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다.</p> <p>④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구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p>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배출방법 및 청결명령 등) ①(생략)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배출방법 및 청결명령 등) ①(현행과 같음)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기타생활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_____
1.~3.(생략)	1.~3.(현행과 같음)
4. 대형폐기물은 <u>배출 3일전에</u> 배출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물품명·크기·수량등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동장이 <u>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u> 내어 놓아야 하다.	4. _____ <u>배출 전일</u> _____
(신설)	5.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특수규격봉투인 피피(P·P)포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5.(생략)	가. 배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배출장소 다. 폐기물 종류 라. 배출량(포대수)
③~⑥(생략)	6.(현행 제5호와 같음) ③~⑥(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②(생략) <u>③특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u> ④(생략)</p> <p>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생략) <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③규격봉투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3”과 같은 규격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u> <u>(신설)</u></p>	<p>제19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_____ <u>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는다.</u> ④(현행과 같음)</p> <p>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현행과 같음) <u>(삭제)</u> <u>③규격봉투 판매업자는 지역주민이 봉투판매소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3과 같은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u> <u>④구청장은 규격봉투 판매업자가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해당 규격봉투 판매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u></p>